

서울특별시마포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6.1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양선주】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」의 관련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규칙」에 편입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의 폐지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-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「지방회계법」 제50조 및 「지방회계법

시행령」 제56조에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」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기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.

- 이는 재무행정 관련 조항을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됨.

※ 참고로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을 「재무회계 규칙」으로 정하고 있음.

-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자면,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에 반영할 때에는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증 한도액을 감안하여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,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,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업무 중요도에 따라 한도액의 상한을 폭 넓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